

第136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2號(附錄)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3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條例規則等公布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4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数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5面
5. 都市環境整備區域 變更指定(案)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7面
6. 2003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承認 議決	
가. 運營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計劃書	9面
나. 市民行政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計劃書	14面
다. 財務建設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計劃書	24面
7. 區政質問 補充質問 答辯書	41面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003. 11. 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0월 22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3년 10월 24일 원안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3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2003. 11. 3)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박 병 하)

가. 개정이유

- 주민자치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내용의 일부를 신설 및 재조정함으로써 조직관리의 안정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화재, 수해 등 대형사고 발생시 종합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에 신설함 (안 제4조제2항제44호)
-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를 “도시관리국”으로 업무를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안 제7조제2항제19호)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충 식) —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없 음)

6. 修 正 案 의 要 旨 (없 음)

7.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